대학 직제규정

개정 2018.06.28. 개정 2019.02.08. 개정 2020.02.27. 개정 2020.03.12. 개정 2020.08.12.
개정 2020.09.15. 개정 2020.09.21. 개정 2021.01.29. 개정 2021.08.09. 개정 2022.01.19.
개정 2022.03.17. 개정 2022.09.06. 개정 2023.04.10. 개정 2023.11.28. 개정 2024.10.14.
개정 2025.02.20. 개정 2025.06.23. 개정 2026.02.09. 개정 2026.03.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혜전학원정관 정관 제7장 제3절 및 혜전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13장 직제, 제14장 부속기관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2.08.>

제2조 (적용범위)

대학의 직제는 법령, 정관 및 학칙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기구)

대학의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무분장)

이 규정에서 정한 각 조직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제5조(교직원)

대학에는 다음과 같이 교원과 직원, 조교를 둔다.

① 교원은 총장, 부총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산학협력중점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의전담교원, 명예총장, 명예교수를 둘 수 있다.<개정 2019.02.08., 2022.01.19.>

② 직원은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하며, 필요에 따라 계약직, 임시직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조교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을 준용하여 둘 수 있다.

제6조 (정원)

교원의 정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에 의하고, 직원은 혜전학원 정관 (별표3)과 같다.

제2장 총장 · 부총장

제7조 (총장) <개정 2022.09.06.>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 대학교를 대표한다.

② 총장 직속기구에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사업단, RISE사업단, 혁신사업단을 둔다.<개정 2023.11.28., 2024.10.14., 2025.02.20., 2026.03.26.>

③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단에는 창의융합교육센터를 두며, RISE사업단에는 사업관리팀, 정주지원팀, 로컬브릿지팀, 늘배움지원팀을 두며, 혁신사업단에는 혁신사업팀을 둔다. <개정 2023.11.28., 2025.02.20., 2025.06.23. 2026.03.26.>

④ 제2항 및 제3항의 조직에는 센터장, 단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 일반직 4급 이상 또는 촉탁직으로 보한다.<개정 2023.11.28. 2026.03.26.>

⑤ 제2항 및 제3항의 조직에는 부센터장, 부단장, 창의융합교육센터장, 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센터장, 부단장, 창의융합교육센터장은 조교수 이상, 일반직 5급 이상 또는 촉탁직으로 보하고, 팀장은 일반·기술직 6급 이상 또는 촉탁직으로 보한다.
<개정 2023.11.28., 2026.03.26.>

⑥ 각 부서에는 필요에 따라 하위부서를 둘 수 있으며, 운영규정(지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28.>

제8조 (부총장)

①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총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제3장 대학본부

제9조 (대학본부)

① 대학의 본부에는 교무처, 기획처, 입학처, 학생처, 글로벌대외교류처, 총무처, 산학협력센터를 둔다.<개정 2019.02.08., 2020.02.27., 2022.01.19., 2023.11.28., 2026.03.26.>

② 제1항의 조직에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입학처장, 학생처장, 글로벌대외교류처장, 총무처장, 산학협력센터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 일반직 3급 이상 또는 촉탁직으로 보한다.<개정 2019.02.08., 2022.01.19., 2023.11.28., 2026.03.26.>

③ 제1항의 조직에는 부처장, 센터장, 단장, 원장, 관장, 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일반직 5급 이상 또는 촉탁직으로 보하고, 센터장, 단장, 원장, 관장,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일반·기술직 6급 이상 또는 촉탁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9.02.08., 2022.01.19., 2026.03.26. >

④ 각 부서에는 필요에 따라 하위부서를 둘 수 있으며, 운영규정(지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규정에 의한 부서의 분장업무는 사무분장규정에 따른다.

⑥ 각 계열, (학)과의 입학정원은 학칙 제4조에 따른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장이 유고 또는 공석인 경우 아래직급 교직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일직급 교직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06.28.><개정 2019.02.08.>

제10조 (교무처)

교무처에는 교무팀, 현장실습지원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전공심화운영팀, 교원양성팀, 역량개발팀, 교양교육팀, 전문기술석사운영팀, 성인학습자지원센터를 두며, 필요에 따라 하위부서를 둘 수 있다.<개정 2019.02.08., 2020.02.27., 2020.03.12., 2021.01.29., 2022.01.19., 2022.03.17., 2022.09.06., 2023.04.10., 2026.02.09., 2026.03.26.>

제11조 (기획처)

기획처에는 기획팀, 성과관리팀(IR)을 두며, 필요에 따라 하위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02.08., 2020.03.12., 2021.01.29., 2022.01.19., 2023.04.10., 2025.02.20., 2026.03.26.>

제12조 (입학처)

입학처에는 입학팀을 두며, 필요에 따라 하위부서를 둘 수 있다.<개정 2019.02.08., 2020.03.12., 2022.01.19., 2023.11.28.>

제12조 1 (학생처)

학생처에는 학생팀, 학생생활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며, 필요에 따라 하위부서를 둘 수 있다.<신설 2023.11.28.>

제12조 2 (글로벌대외교류처)

글로벌대외교류처에는 대외교류팀, 국제교육원, 유학생지원센터를 두며, 필요에 따라 하위부서를 둘 수 있다.<신설 2026.03.26.>

제13조 <삭제> <개정 2022.01.19.>

제14조 <삭제> <개정 2022.01.19.>

제15조 (총무처)

총무처에는 총무팀, 회계팀을 두며, 필요에 따라 하위부서를 둘 수 있다.<개정 2017.1.24., 2019.02.08., 2020.02.27., 2020.03.12., 2022.01.19.>

제16조 (산학협력센터) <개정 2022.01.19.>

산학협력센터에는 취업창업지원팀, 산학협력지원팀을 두며, 필요에 따라 하위부서를 둘 수 있다.

제4장 계열 및 (학)과

제17조 (계열(전공) 및 (학)과) <개정 2022.01.19.>

계열(전공) 및 (학)과에 계열장, 전공장, 학과장, 교무학과장, 실습학과장을 둘 수 있으며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① <삭제>
② <삭제>

제17조 2 (실습시뮬레이션센터) <개정 2022.01.19.>
① 간호학과에는 실습시뮬레이션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제18조 (교양과) <조옮김 제17조 → 제18조 2020.02.27.>
대학의 인문교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양과장을 둘 수 있으며,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

제5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19조 (부속기관) <조옮김 제18조 → 제19조 2020.02.27.>
① 대학의 부속기관에는 학술정보원, 평생교육원, 혜전방송국, 인권센터, 식품산업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를 둔다.<개정 2017.1.24., 2019.02.08., 2021.01.29., 2021.08.09., 2022.01.19.>
② 부속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 일반직 5급 이상 또는 촉탁직으로 겸보한다.<개정 2019.02.08., 2026.03.26.>
③ 부속기관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일반·기술직 6급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19.02.08.>
④ 부속기관에는 필요에 따라 하위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각의 운영규정(지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02.0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기관의 분장업무는 사무분장규정에 따른다.

제20조 (학술정보원) <조옮김 제19조 → 제20조 2020.02.27.>
① 원에는 학술정보팀, IT지원팀을 둔다<개정 2019.02.08., 2021.01.29.>
② 원에는 원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일반직 5급 이상 또는 촉탁직으로 겸보한다.<개정 2019.02.08., 2026.03.26.>
③ 팀에는 팀장을 두며, 일반·기술직 6급 이상으로 보한다.

제20조의2 <삭제 2021.01.29.>

제20조의3 <삭제 2021.01.29.>

제21조 <삭제 2019.02.08.><조옮김 제20조 → 제21조 2020.02.27.>

제22조 <삭제 2019.02.08.><조옮김 제21조 → 제22조 2020.02.27.>

제23조 <삭제 2019.02.08.><조옮김 제22조 → 제23조 2020.02.27.>

제24조 (혜전방송국) <조옮김 제23조 → 제24조 2020.02.27.>
국에는 국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일반직 5급 이상 또는 촉탁직으로 겸보한다. <개정 2019.02.08., 2021.01.29., 2026.03.26.>

제25조 (평생교육원) <조옮김 제24조 → 제25조 2020.02.27.>
원에는 원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일반직 5급 이상 또는 촉탁직으로 겸보한다. <개정 2026.03.26.>

제26조 <삭제 2021.01.29.>

제27조 <삭제 2019.02.08.><조옮김 제26조 → 제27조 2020.02.27.>

제6장 삭제<2019.02.08.>

제28조 <삭제 2019.02.08.><조옮김 제27조 → 제28조 2020.02.27.>

제7장 수탁 운영기관

제29조 (인권센터) <신설 2022.01.19.>
센터에는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교원 또는 일반직 5급 이상으로 보한다.

제30조 (식품산업연구소) <신설 2022.01.19.>
연구소에는 소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5급 이상으로 보한다.

제31조 (산업기술연구소) <신설 2022.01.19.>
연구소에는 소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5급 이상으로 보한다.

제32조 (인문사회연구소) <신설 2022.01.19.>
연구소에는 소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5급 이상으로 보한다.

제23조 (수탁 운영기관) <조옮김 제28조 → 제29조 2020.02.27. → 제33조 2022.01.19.>
① 대학에는 지역사회 및 산업과 연계한 수탁운영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수탁 운영기관의 장은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채용을 통하여 선발한다.
③ 수탁 운영기관은 외부(공모) 사업 등을 참여하여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장 학교기업

제34조 (학교기업) <조옮김 제29조 → 제30조 2020.02.27. → 제34조 2022.01.19>

① 대학에는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학칙 제52조의 2에 의거하여 학교기업을 두며, 학교기업에는 혜전베이커리, 혜전카페테리아, 혜전푸드트럭을 둔다.<개정 2020.09.21.>

② 학교기업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추가로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제9장 특수법인

제35조 (산학협력단) <조옮김 제30조 → 제31조 2020.02.27. → 제35조 2022.01.19>

① 단에는 단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일반직 5급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19.02.08.>

② 산학협력단에는 혜전베이커리, 혜전카페테리아, 혜전푸드트럭을 두며 각각의 운영자는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한다.<개정 2020.09.21.>

③ 단에는 사업관리팀, P-TECH공동훈련센터, 치유센터를 둔다.<신설 2019.02.08.><개정 2020.09.15., 2022.01.19., 2022.03.17.>

④ 팀에는 팀장을 두며, 일반·기술직 6급 이상으로 보한다.<신설 2019.02.08.>

⑤ 연구소에는 소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신설 2019.02.08.>

제10장 보칙

제36조 (위원회) <조옮김 제31조 → 제32조 2020.02.27. → 제36조 2022.01.19>

대학의 주요업무를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기타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 (TF팀) <조옮김 제32조 → 제33조 2020.02.27. → 제37조 2022.01.19>

대학의 신규 및 특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T/F팀 등의 특별사업팀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2016.0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신설 및 폐지된 기구와 관련 보직의 임면은 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0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2.0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3.1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1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8.0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8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1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9.0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9월 0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4.1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4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0.1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6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2.0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2월 0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03.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3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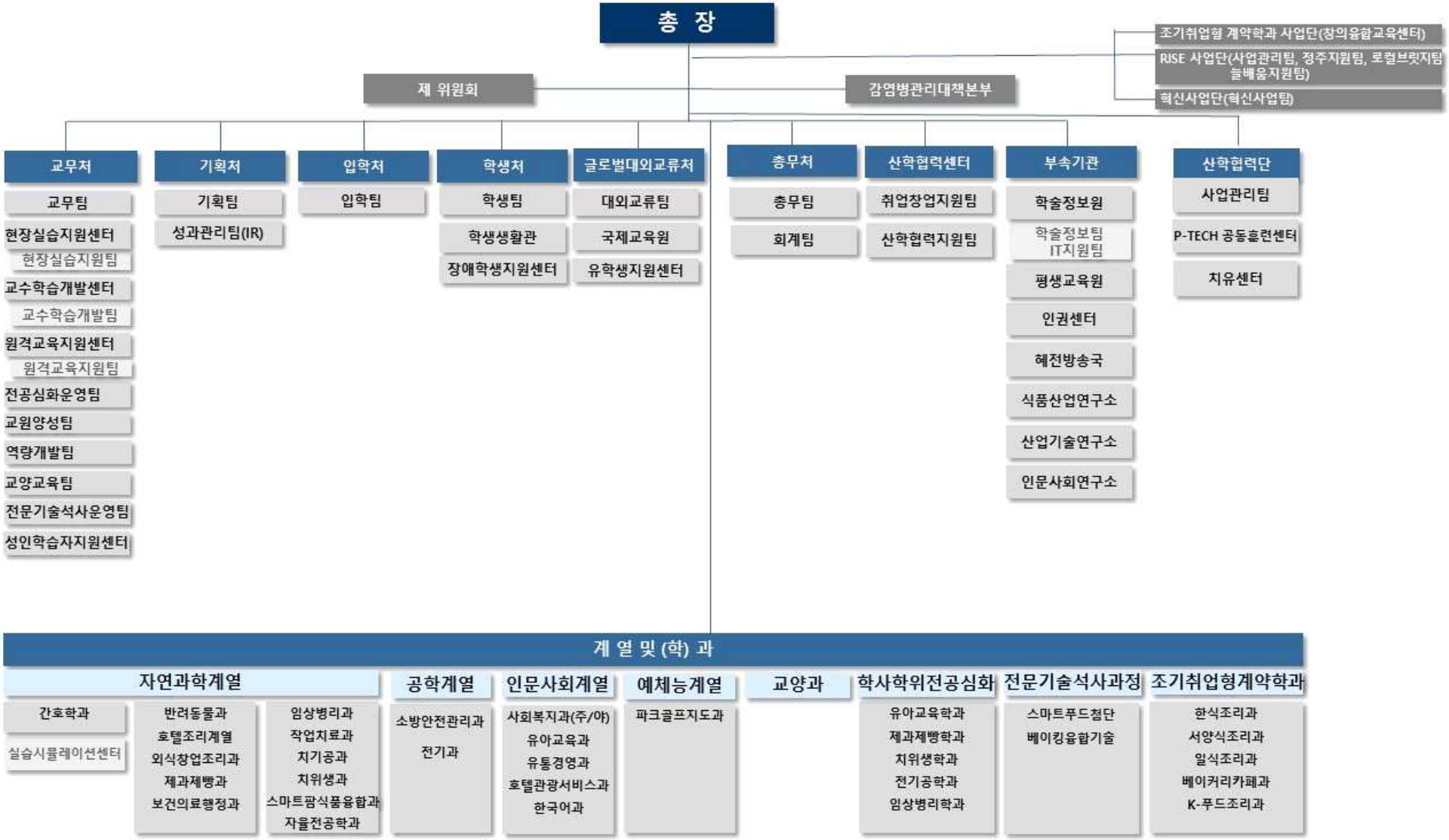
[별표 1] <개정 2020.02.27., 2020.03.12., 2020.08.12., 2020.09.15., 2020.09.21., 2021.01.29., 2021.08.09. 2022.01.19., 2022.03.17., 2022.09.06., 2023.04.10., 2023.11.28., 2024.10.14., 2025.02.20., 2025.06.23., 2026.02.09., 2026.03.26.>